

단국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학과 운영 내규

2024년 3월 16일 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문화예술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대학원 문화예술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문화예술학과 소속교수들은 문화예술학과 석·박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 제4조 (교육과정)** 대학원 학칙 제2조의 교육목적을 준용하여 ‘문화예술학의 기초 및 응용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 제5조 (과목개설)** ① 교과목은 학과공통, 전공선택, 연구필수로 구분하여 개설하며 필요에 따라 필수이수 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필수이수 교과목은 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학기별 개설 교과목은 주임교수와 학과 소속교수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 ③ 교과목은 전공을 고려하여 학생 중심으로 개설하며, 지도교수는 학생의 전공과 부합되는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④ 학과 내 개설 교과목을 중심으로 학기 당 6~8개의 교과목을 개설하며, 교육과정 및 입학 기준 학기별 이수과정을 고려하여 순환 개설한다.
- 제6조 (교·강사 배정)** ① 교·강사 배정에서 우리 대학 전임교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 ② 외부 전문가는 유관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를 기준으로 하며, 특수 분야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③ 참여 교·강사별 안식 학기를 시행하여 교·강사의 균형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① 논문 지도교수의 선정은 학생의 연구 방향을 고려하여 배정하되, 우리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정년트랙 교원으로 지도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우리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정년트랙 교원으로서 정년퇴임 3년 이내의 자로 하며, 단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정년퇴임 후 1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동 지도교수(내부 또는 외부)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11조의3을 준용하여 위촉한다.

제8조 (지도교수의 변경) 논문 지도교수의 변경은 대학원 학칙 제37조 ④에 따라 논문심사신청 제출 1학기 전에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자격시험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① 종합학력시험(전공 자격시험)은 응시자의 이수 교과목 중 우리 대학 전임교원이 개설한 통합과정과 박사과정은 4개 과목, 석사과정은 2개 과목으로 하며, 논문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 할 수 없다.

② 출제자는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구성하여 출제하며, 절대평가 기준에 따라 과목별 8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합격점으로 한다.

③ 교육과정 운영상 전임교원이 개설한 교과목 부족으로 ①항의 규정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 지도교수의 과목을 추가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① 2018학년도 1학기 이전 입학자는 전 과목 성적 9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자, 혹은 종합학력시험(전공 자격시험) 시행일 전까지 학생을 주저자로 하고 논문 지도교수 또는 공동 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하여 등재한 논문의 경우에만 종합학력 시험을 면제한다.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국제학술지에 한하며 국제학술지의 경우 학교에서 인정하는 기준과 문화예술학과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2018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자는 종합학력시험 시행일 전까지, 다음과 같이 종합학력시험(전공 자격시험) 면제조항을 적용한다.

1. 학생을 주저자로 하고 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
2. 학생을 주저자로 하고 지도교수가 인정한 공동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
3.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등재후보지 제외) 및 국제학술지(SCI(E), SSCI, A&HCI급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에 한한다.
4. 논문 1편당 2과목의 종합학력시험이 면제되며, 통합과정과 박사과정은 2편까지 제출할 수 있다. 석사과정과 통합과정 중도 포기자일 경우, 1편의 논문으로 종합시험 면제 대상이 된다.
5. 사사 표기는 단국대학교로 한다.

제6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 제11조 (논문 예비발표 제출 및 심사)** ① 학위논문 심사 신청 예정자는 논문 심사 해당 학기의 직전 또는 이전 학기 중 학과에서 운영하는 논문 예비발표[프로포절(proposal)] 심사과정을 통과하여야 한다.
- ② 논문 예비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내용을 수록하여 학과에 제출해야 한다.
1. 문헌 분석 중심의 이론 연구 : 연구 논문의 제목(부제가 있는 경우 부제 포함), 연구 논문의 목차, 연구 목적(필요성)과 연구 범위, 구체적인 연구방법(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포함), 이론적 배경 진행 사항, 예상되는 결과 및 참고문헌
 2. 실증 분석 중심의 경험 연구 : 연구 논문의 제목(부제가 있는 경우 부제 포함), 연구 논문의 목차, 연구 목적(필요성)과 연구 범위, 선행연구의 검토 및 조사 설계(조사방법 및 설문지 포함), 예상 되는 결과 및 참고문헌
- ③ 논문 예비발표 심사는 지도교수가 선임한 우리 대학 전임 교원 1인 이상, 문화예술학과 소속교원 1인 이상이 참여한, 지도교수 포함 3인 이상 교수들의 심사 결과 승인을 얻어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논문 예비발표 승인을 받지 못한 발표자는 차기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논문 예비발표는 매 학기 종강 이전(6월 초, 12월 초)에 시행하며, 전공학점을 통합과정과 박사과정은 27학점 이상, 석사과정은 24학점 이상 취득 예정인 자와 외국어시험 및 종합학력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 제12조 (학위논문 심사)** ①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제10조 ②항을 따름)을 게재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 ② 논문 예비발표 심사과정을 통과한 학위논문 심사 신청 예정자일지라도 제1항에서 규정한 논문 게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논문 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단, 논문 심사 발표일 전까지 게재 확정된 학술 논문의 게재예정증명서(등재지의 발행기관장 직인 포함)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건부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③ 논문 심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논문 지도교수와 함께 심사 신청 이전에 논문의 완성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논문 심사 발표 시 논문의 완성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될 경우, 지도교수는 논문 심사 참여 교수들의 심의를 거쳐 수정 발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1. 문화예술학의 범주를 벗어난 주제로 전공 적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정한 경우
 2. 박사학위청구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논문의 구성 체계, 내용 체계, 분량 등)에 현저히 미비한 경우
 3. 논문 심사 참여교수가 논문의 완성도가 현저히 낮다고 판정한 경우
- ④ 학위논문 심사 신청자는 심사일 10일 전까지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학과 구비 양

식), 등재지 게재논문 별쇄본이나 게재예정증명서, 학위청구논문 심사 논문을 학과에 제출해야 한다.

⑤ 통합과정의 학생 또는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1.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3개 학기 이상 등록 후 전공과목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석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석사학위논문을 제출 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2. 논문 대체로 연구논문을 선택한 학생은 전공과목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3. 연계과정을 이수하고 통합과정으로 진학한 학생은 3개 학기 이상 등록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으로 할 수 있다.

4. 중도 포기 자가 석사학위과정으로 학적을 변경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석사과정의 졸업으로 인정한다.

⑥ 주임교수는 박사학위 신청자일 경우 제11조와 제12조 ①의 요건을 충족하고 석사학위 신청자일 경우 제12조 ⑤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심사 논문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한다.

⑦ 지도교수는 심사일 10일 전 주임교수에게 심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하며, 지도교수는 심사위원 전원에게 논문심사 7일 전까지 심사 일정을 공지하여야 한다.

⑧ 논문 지도교수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학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최종 논문 심사의 진행) ① 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한 학위청구논문 신청자의 논문 지도교수는 대학원 학칙에 따라 최종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일 경우, 내부 심사위원 3인은 지도교수 포함 우리 대학 소속 교원 중 위촉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부 심사위원 2인은 유관 분야 전임교원, 외부 전문가, 내부 심사위원 자격과 동등한 자로서 지도교수가 선임한 자로 한다.

③ 석사학위일 경우, 학위논문 심사는 내부 심사위원 3인, 연구논문은 내부 심사위원 2인으로 지도교수 포함 우리 대학 소속 교원 중 위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최종 논문심사의 진행은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제7장 수업 참여교수 및 운영위원회

제14조 (수업 참여교수) ① 주임교수는 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과 소속교수와 협의하여 우리 대학의 유관 분야 전임교원, 문화예술학 분야 전공 교원 등의 수업 참여교수를 위촉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는다. 단, 전임교원 중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없을 경우에는 필요적 예외를 둘 수 있다.

② 수업 참여교수는 개설된 교과목의 강의 및 해당 교과과정에 대한 관리 의무가 있다.

③ 수업 참여교수로 위촉된 전임교원은 학과에서 의뢰한 종합학력시험의 출제와 평가 의무가 있으며, 학위청구논문의 내부 심사위원 및 논문(공동)지도교수 위촉에 참여한다.

제15조 (학과 운영위원회) ① 우리 대학 전임교원 및 특별교원 중 유관 분야의 전공자로 구성된 5~9인의 학과 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포함)를 둔다.

② 주임교수는 문화예술학과 통합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개설 목적을 유지·계승할 의무가 있으며, 다양성과 균형성을 고려하여 학과 운영위원을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과 소속교수와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주임교수가 결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④ 주임교수는 학과 운영위원회를 매 학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⑤ 학과의 학사 조교는 학과 운영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진행 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의결정족수) 학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운영위원 과반의 출석(위임 포함)과 출석 운영위원 2/3의 찬성으로 한다.

제8장 보칙

제17조 (준용) 본 운영 내규 이외의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부칙(2024. 03. 16.)

제1조 (시행일) 이 운영 내규는 201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 이 운영 내규는 2018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 이 운영 내규는 202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하며 적용한다.